# 1. 벌칙 등

- 1.1 벌칙(법106~111조)
- 1) 건축물 기초/주요구조부 중대 손괴 야기
  - 10년 이하 징역
    - ·if. 업무상 과실→5년 이하 징역/금고 or 5억원 이하 벌금
  - 죽거나 다친 경우→무기징역 or 3년 이하
    - ·if 업무상 과실→10년 이하 징역/금고 or 10억원 이하 벌금

#### 2) 3년 이하 징역 or 5억원 이하 벌금

- 건축허가, 용도변경, 건축선제한, 건폐율, 용적률, 대지안의 공지, (일조)높이제한, 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(도시지역 내)
- 징역과 벌금은 병과 가능

### 3) 2년 이하 징역 or 2억원 이하 벌금

- 현장조사, 검사, 확인업무 대행 시 거짓 서면 보고한 자
- 지역안전센터 업무내용 중 기술적 사항에 대한 보고 확인 등을 거짓으로 한 자

## 1. 벌칙 등

## 1.1 벌칙(법106~111조)

#### 4) 2년 이하 징역 or 1억원 이하 벌금

- 건축허가, 용도변경, 건축선제한, 건폐율, 용적률 대지안의공지, (일조)높이제한 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/시공자(도시지역 외)
- 허가/신고변경, 착공신고(시공자 제한), 사용승인 공사감리보고 법 위반 건축주/시공자
- 공사감리자 지정 없이 공사를 하게 한 자
- 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감리자로 지정한 자
- 감리자로부터 시정/재시공/공사중지 요청을 따르지 않은 공사 시공자
-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/완료보고서 미제출한 자
- 건축물 유지/관리 위반 건축물 소유자/관리자
- 손궤우려 옹벽 설치 위반한 건축주/공사시공자
- 구조안전 위반 설계자, 감리자, 시공자, 관계전문기술자
- 내화구조/방화벽 위반 설계자, 감리자, 시공자
- 방화 지장 없는 재료 사용하지 않은 시공자, 설계자, 감리자
- 건축설비 기준 위반 설계자, 감리자, 시공사, 관계전문기술자

#### 5) 5천만원 이하 벌금

- 건축신고, 신고변경, 가설건축물 대장기재, 착공신고, 사용승인 신고/신청을 안하거나 거짓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
- 시공자의 합당한 설계변경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설계자
- 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 작성 요청을 따르지 않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하지 아니한자
- 공사현장 위해방지 조치를 위반한 시공자
- 토지굴착, 대지조경을 위반한 건축주, 시공자
- 기존 건축물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위반한 자

# 1. 벌칙 등

## 1.2 양벌규정(법112조)

#### 1) 건축물 손괴 시

- 개인/법인 대표자, 대리인, 사용인, 종업원이 건축물의 기초/주요구조부에 손괴를 야기한 경우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법인/개인도 10억원 이하의 벌금. 단, 법인/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

#### 2) 기타 벌칙 규정 위반 시

- 개인/법인 대표자, 대리인, 사용인, 종업원이 그 외 벌칙 규정 위반한 경우 행위자 뿐만 아니라 법인/개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. 단, 법인/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

# 1. 벌칙 등

## 1.3 과태료(법113조)

#### 1) 200만원 이하 과태료

-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미신청한 자
- 공사현장에 설계도서 두지 아니한 자
-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
- 건축자재 점검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-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

#### 2) 100만원 이하 과태료

- 시정/재시정 요청을 따르지 않은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감리자
- 현장조사, 검사, 확인을 허가권자에게 서면 보고하지 않은 대행자
- 건축물유지/관리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소유자, 관리자
- 철거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, 관리자
-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에 협조하지 않은 건축주, 수유자, 관리자
- 옹벽 등 공작물의 유지 관리상태 점검결과 보고하지 아니한 자

#### 3) 50만원 이하 과태료

-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현장 이탈한 현장관리인